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응급의료에 있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22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응급의료에 있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	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2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29.
- (3) 회 부 일 : 2025. 4.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의료에 있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¹⁾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u>사회적 신분</u>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 ----- <u>사회적 신분, 거주지역</u> ----- ----- ----- ----- -----.-----.

1) 법 제3조 후단에 의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개정안의 대상에 포함됨.

나. 검토의견

- 국민이 보건의료에 있어 지역 등의 이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제1항²⁾ 및 제36조제3항³⁾을 통해 선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제시되어 있음([참고 1]).
- 따라서 안 제3조와 같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동 권리는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계속하여 증가하여 50.4%(2021년 기준)에 이르는([그림 1]) 등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별 의사 수([표 1])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차 또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보건의료의 공급과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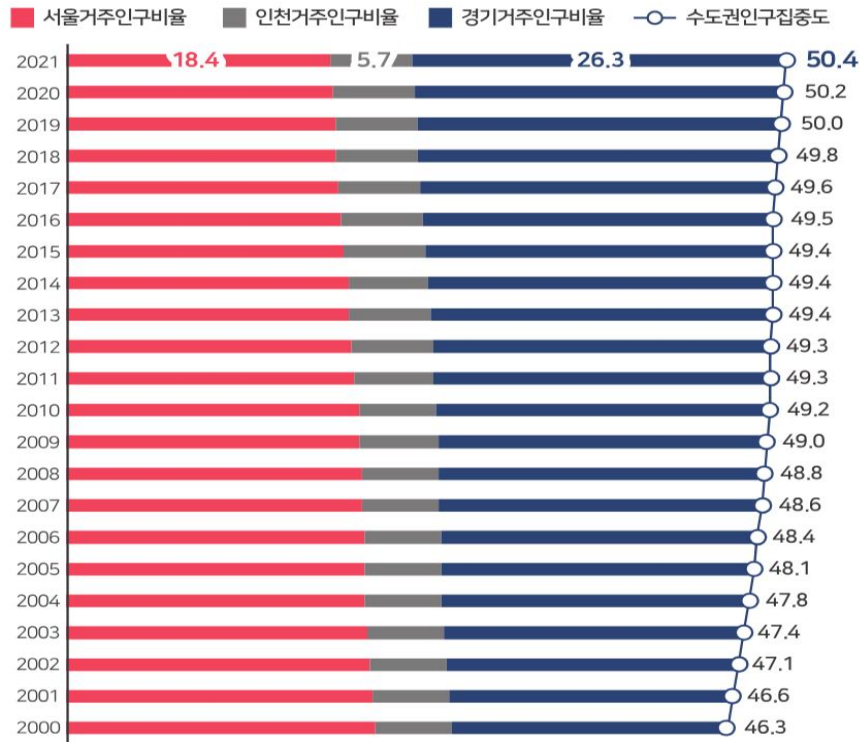
2)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3)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그림 1] 수도권 인구집중도 변화(2000-2021년)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1 국토조사, 2023. 2.

[표 1]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단위: 명)

시도명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비고
계	2.13 (한국 평균)	OECD 평균 3.6명
서울	3.37	
부산	2.45	
대구	2.55	
인천	1.77	
광주	2.54	
대전	2.56	
울산	1.60	
경기	1.68	
강원	1.81	
충북	1.57	
충남	1.54	
전북	2.06	
전남	1.75	
경북	1.38	
경남	1.71	
제주	1.77	
세종	1.23	

주: 2021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

-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의료인력 파견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중

*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 현황 [참고 3]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의 형평성 있는 접근을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지역 간 응급의료 제공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응급의료 인프라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지역 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1】	지역적 차이에 관계없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관련 조문
---------------	--------------------------------------

구분	관련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개정 2025. 4. 1., 시행 2026. 4.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u>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u>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분	관련 조문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료: 각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참고 2】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 현황
---------------	-------------------------

- (취약도 정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퍼센티지(%)
- (취약지 기준) 취약도 30% 이상인 시·군·구(98개)
 - * 분석 자료와 현실(실제 거주위치 및 이동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상 27% 이상인 지역까지 취약지로 인정
-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 현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 대구	군위군
2. 인천	강화군, 옹진군
3.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제주	서귀포시